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

추산초등학교

## I. 운영목적

1.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수강을 직접적인 지원하여 학생의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

## II. 개요

\*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안)에 따름.

1. 지원기간 : 2023. 3. ~ 2024. 1.

- 2023년 3월 운영 프로그램부터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기초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도 교육비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음.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2) 학교별 교부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수강권의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 제한 없음
  - 가) 학교별 1인당 연간 사용 한도금액 초과 후,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보호자(학부모) 부담으로 수강해야 함
  - 나) 학교의 예산 잔액이 남아있고, 학생 1인당 60만원 이하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에게 발생한 수익자부담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반드시 환불토록 함
  - 다) 지원대상자 중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3. 지원대상자

#### 1)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

가구유형	기 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li>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li> </ul>
차상위 장애수당 (연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이동)수당, 연금을 받는 경우</li> </ul>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li> </ul>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舊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경우</li> </ul>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 등록 장애인

- 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 마) 탈북가정학생

- 근거: 경기도교육청탈북가정청소년교육지원조례
- 대상: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초·중·고교 학생
- 교육비 신청 없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으로 확인 후 지원 가능

#### 2)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 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단위학교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자를 높은 순위로 지원대상자 선정

### 3) 3순위 : 학교장 추천

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방과후학교관리위원회 대체 가능)를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나) 선정비율 :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지원대상자(기준일 : 5.31일자) 중 1순위(난민, 세월호 피해 학생 및 탈북학생 제외) 및 2순위 학생수의 10% 이내로 추천(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신취약계층) 학교장 추천 비율을 15%까지 운영가능

※ 1·2순위의 10% 또는 15% 이내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 특별 지원대상자 변경 불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한 인원 비율을 준수해야 함

※ 5월 31일자 이후 1·2순위 학생수가 증가한 경우 10% 또는 15%이내 비율내에서 추가 학교장 추천 가능함

※ 신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라) 나이스로 통보된 1·2순위 학생수가 10%(10명) / 15%(15명) 이하일 경우, 1명 / 2명 선정 가능

### 4)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가) 다문화가정 학생 중 교육비 지원 신청이 불가한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방과후학교관리위원회 대체 가능)를 거쳐 지원

※ 선정 학생은 학교장 추천 10% 또는 15%이내 비율에 포함 하지 않음

5)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1순위 · 2순위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및 순위별 차등 지원 가능

※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위별 차등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원 제외대상**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경기도교육청(공사립)의 특수학교(급)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반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지원하지 않음(중복지원 불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특수교육과에서 꿈이든카드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 별도 지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4. 저소득층 수급 자격 및 소득인정에 따른 지원자 외 선정방법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

**※ 학교장 추천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제도 개요**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가) 교육비 지원 심사 이후 학교장 추천 절차를 진행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업무 tip**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예시)**

- 교장·교감, 관련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교원위원,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구성방법은 학교별로 결정)
  - 지역내 학교간 선정기준의 형평성 및 지역간 형편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석시킬 것
- ※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란 행정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상태를 의미, 단순 원거리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

나) 선정비율 :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지원대상자(기준일 : 5.31일자) 중 1순위(난민, 세월호 피해 학생 및 탈북가정학생 제외) 및 2순위 학생수의 10% 또는 15% 이내로 추천 가능(5월 31일자 이후 1·2순위 학생수가 증가한 경우 10% 또는 15%이내 비율내에서 추가 학교장 추천 가능)

다) 나이스로 통보된 1·2순위 학생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1명 선정 가능 (15명 이하일 경우, 2명 선정 가능)

**[예시] 학교장 추천 비율**

1:2순위 대상자수	1-19명	20명-29명	30-39명	40명-49명
추천 가능인원	1명	2명	3명	4명

- 1:2순위 대상자 수 : 당해학년도 5.31.일자 기준 나이스로 통보되어 온 1:2순위 대상자 수
- 10% 또는 15%이내 이므로 소수점은 반드시 절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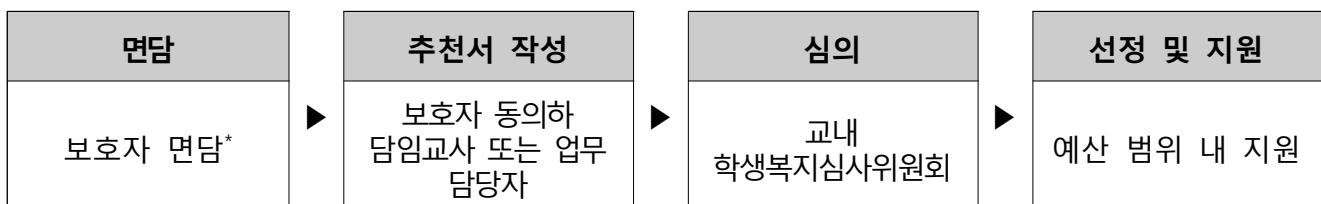
**라) 추천 제출 서류**

- 학교장 교육비 지원 추천서 : 초·중·고 의무사항
-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자격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영수증을 나이스 교육비 자료로 같음하여 처리 가능(나이스로 통보된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장 추천 재고)
- 나이스로 통보된 자격 기준이 없을 경우, 기타 증빙서류 제출

**❖ 학교장 추천 선정 사례 및 증빙서류 (예시) ❖**

연번	선정사유	제출서류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li> </ul>
2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 8생 중인 사항 인쇄</li> <li>■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등</li> </ul>
3	부양의무자가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과다 지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li> <li>■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li> </ul>
4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통/반장 사실확인서</li> <li>■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li> </ul>
5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신고서</li> <li>■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6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매진행통지서 등</li> </ul>
7	신용불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확인서</li> </ul>
8	학교장추천의 당위성이 구체적인 경우로 객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등</li> </ul>

**마) 추천 절차**



- 보호자 면담 : 교육비 탈락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확인 및 학교장 추천자 선정시 신청자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후 학교장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 추천서 작성 · 제출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보호자의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 제출
  -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부당 지원에 해당함(단순 미납자 선정 금지)
- 위원회 심사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방과후학교소위원회 대체 가능)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보호자의 근로·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득인정액을 참고자료로 활용

## 바) 유의사항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부득이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 교육비 신청 기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를 감안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인원은 제한비율 10% 또는 15%(신취약계층 포함 시)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 한해 지원
  -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 5. 자유수강권 프로그램 지원범위

### 1)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

나) 토요일 및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

다) 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미준수 시 미지원

\*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등 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EBS프로그램 운영가능

### 2) 지원범위 제외대상

가) 일회성 프로그램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수학여행 등

나) 사설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수강료

다) 수익자 부담 경비가 없는 방과후 프로그램(※ 전교생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구성된 학교의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라) 교육과정 내의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

## 6. 지원내용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가) 강사료, 교재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모두 지원 가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는 급·간식비 지원 불가(초등돌봄교실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급·간식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 2) 초등돌봄교실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급·간식비

가)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급·간식비는 돌봄교실 저소득층 급·간식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청 지원금(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으로 우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방과후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가능

나)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자유수강권 대상자 1·2순위까지)와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3순위(학교장 추천) 및 기타(저소득층 다문화가정)까지 지원 가능

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인당 한도액이 있으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급간식비로 이용할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용 금액이 줄어들므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안내 및 업무 처리 시 유의

3)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운영 금지

## 7. 지원기간 산정 기준

1)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텀)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고 소득·재산조사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추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는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 중 낮은 신청월로 소급하여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만으로는 지원 불가

2) 지원대상자가 미지원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중지 된 경우  
-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당해 학년도말까지 지원 가능

3) 학교장 추천 대상자(3순위) 및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확정일이 속한 프로그램 운영 기간(텀)부터 지원 가능
- 단, 당해학년도 최초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은 학년도 시작일 부터 지원 가능

## 8. 장기결석자 제재조치

1) 상담 및 통보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총 수업시수의 1/2 불참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 강사 또는 담당 행정실무사가 상담 지도 또는 문자안내를 하고,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2) 제재 기준

지원학생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총 수강일의 1/2 이상일 경우 다음분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개인 일정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 일수에 포함

## 3) 후속 조치

제재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담 등의 지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9. 추가지원 기준 - 2021학년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름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이 60만원을 모두 지원받고, 프로그램 출석율이 80%이상으로 성실하게 출석한 학생은 추가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공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 2) 분기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모두 지원한다.
- 3) 예산사용이 거의 다 되어 소진이 예상 될 경우 순위 명부에 따라 지원하되, 공정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강좌 중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세 번째 강좌 -네 번째 강좌- 다섯 번째 강좌 순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강좌까지 지원한다.

## 10. 자유수강권 예산신청 및 교부

분기 (사용분)	1분기* (3~6월)	2분기 (7~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24.2월)
신청시기	3월	7월	9월	12월
교부(재배정) 시기	3월	7월	9월	12월

※ 본교 1분기 예산신청액 : 13,000,000원 (3월 자유수강권 신청자 75명- 중복포함)

## 11. 기타운영사항

### 가. 학부모(보호자) · 학생 홍보

- 1) 교육비 집중신청기간('23.3.2.~ 3.17.)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3월부터 수강토록 유도
- 학교는 학생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등 안내 실시
- \* 신청일이 속하는 달(텀)부터 소급하여 환불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소득계층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별적 지원
- 4)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 및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토록 안내

#### 나. 개인정보 보호 철저

- 1)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점검
- 2)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가)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하게 하거나,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 사정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나)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 원칙적 금지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 다)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라)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 최고 파면 처분 가능

#### 다. 자유수강권 지원 관리 철저

- 1)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산 집행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일률적 수업 참여 독려 금지
- 2) 동일 지역 내에서 학교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 3)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 등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타 지원금이 있는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에 대하여도 타 지원금에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며, 자유수강권만으로 전액 지원 불가)

※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전체학생에게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고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시, 자유수강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위의 집행 사례 유념하여 업무 처리

라.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부정수급 발생 근절

1)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기 위해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2) 교직원

가) 자유수강권 집행의 오용 및 조직적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지원대상 학생의 실제 수강여부 확인을 통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관리 철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장기결석자 지원 제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업목적(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과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유수강권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유수강권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기결석자 : 전체 수업 시수의 1/2이상 결석한 학생
- 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 교육비 지원 절차에 따라 NEIS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또는 불가피하게 전학 등의 사유로 NEIS에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학교 내부 문서로 대상자로 선정한 학생)
- ③ 학생복지심사위원회 :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및 장기결석자의 지원 제한을 결정 할 수 있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용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 제한원칙) ① 장기결석자에 대한 지원 제한은 선(先)유도, 후(後)지원 제한의 방식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지원 제한 시 사업목적(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향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지원 제한대상) 특별한 사유없이(병결,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전체 수업 시수의 1/2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제한방식) ①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또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교사 및 강사, 이하 담당교사라 한다)는 자유수강권 사용 대상학생이 장기결석자에 해당 할 경우 결석 사유를 조사하고 대상학생의 프로그램 수강의사에 대해 면담을 실시한다.  
② 담당교사는 대상 학생이 수강 의사를 표명하고도 전체 수업시수의 1/2이상 결석 시 학교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해당 분기 자유수강권 사용에 제한을 한다.(다만 지원 제한기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학생이 프로그램 수강의사를 표명하고 성실히 출석을 약속한 경우 담당교사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담당교사는 대상 학생의 자유수강권 사용을 제한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학생 면담을 거친 후 해당 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를 표명하였을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담당교사는 장기결석자에 대해 제제를 받은 학생이 같은 행위를 반복 시 2분기 동안 자유수강권 사용기회를 제한한다.(지원 제한 기간은 2분기 이상 지원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담당교사는 장기결석자에 대해 지원 제한을 하였을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7조(예산관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중 장기결석자에 해당된 학생에게 지원예정된 예산은 자유수강권 예산 목에 편입하고 재 지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자에게 지원 할 수 없다.

제8조(통지) ① 담당교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대상자가 장기결석자에 해당 될 경우 사용중지 및 수익자 부담으로의 전환 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에 명시하여 통지한다.

② 담당교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대상자가 장기결석자에 해당되어 지원 제한을 한 경우 지원 제한 사유 및 지원 제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9조(담당교사의 의무) 담당교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장기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을 면담 할 의무
2. 장기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 제한하기 위하여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 안전을 심의 요청할 의무
3. 장기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지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안전을 심의 요청할 의무
4. 장기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지원 제한이 확정된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의무

제10조(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권한) 각급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기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자유수강권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지원 제한 기간, 지원 제한 여부 결정)
3. 장기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자유수강권 지원 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던 장기결석자에 대한 규정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